

사 업 연 도		주요계정명세서(갑)			법 인 명		
					사업자등록번호		
① 구 분			② 근거법 조항	코드	③회사계상금액	④세무상부인 (조정)금액	⑤차가감금액 (③-④)
준비금 총당금 등	⑩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		「법인세법」 제29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4조	53			
	⑩② 퇴직급여충당금		「법인세법」 제33조	12			
	⑩③ 퇴직연금부담금		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44조의2	71			
	⑩④ 대손충당금		「법인세법」 제34조	13			
	⑩⑤ 대손금		「법인세법」 제19조의2	72			
손금 산입	⑩⑥ 합병양도손익		「법인세법」 제44조	55			
	⑩⑦ 분할양도손익		「법인세법」 제46조	56			
	⑩⑧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		「법인세법」 제47조	57			
	⑩⑨ 현물출자자산양도차익		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	50			
	⑩⑩ 교환자산양도차익		「법인세법」 제50조	58			
익 금 불산입	⑩⑪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		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6호	59			
기부금	⑩⑫ 특례기부금		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	41			
	⑩⑬ 우리사주조합 기부금	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 조의4	78			
	⑩⑭ 일반기부금 한도액		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	66			
	⑩⑮ 일반기부금		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	42			
	⑩⑯ 기타기부금		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4항	73			
기업 업무 추진비	⑩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		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	49			
	⑩⑱ 기업업무추진비 (⑩⑲, ⑩⑳, ㉑ 포함)		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	65			
	⑩⑲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		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2항	61			
	⑩㉒ 문화 기업업무추진비	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 조제3항	67			
	⑩㉓ 전통시장,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 추진비	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 조제6항	79			
⑩㉔ 외화자산·부채평가손익			「법인세법」 제42조	74			
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차입금이자	⑩㉕ 업무무관 부동산 등	「법인세법」 제28조제1항	76				
상 여 배당 등	⑩㉖ 소득처분금액 (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106조)		97	⑩㉗ 이익처분금액 (「상법」 제462조 등)		98	

작성 방법

1. ③ 회사계상금액란: 이 서식의 계정구분(①)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[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(①)의 금액]을 적습니다.
※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2.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란:
가. 이 서식의 계정구분(①)별로 "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"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.
나.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(과세표준금액 증가) 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,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(과세표준금액 감소) 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(숫자 앞에 "-" 표시).
3. ⑤ 차가감금액란: 회사계상금액(③)에서 세무조정금액(④)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(⑤)란에 적습니다.
4. ⑮ 대손금란: "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(별지 제34호서식)"의 ㉞ 금액의 계란의 금액과 ㉟ 금액의 계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, "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(별지 제34호서식)"의 ㉠ 부인액 계란의 금액 및 ㉡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㉢ 부인액 계란의 금액 및 ㉣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란에 적습니다.
5. ⑯ 특례기부금란:
가. ③ 회사계상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③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나.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⑦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※ 연결법인의 경우 "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6서식(을)]"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⑰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란:
가. ③ 회사계상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⑨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나.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7. ⑱ 일반기부금 한도액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⑭ 일반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.
8. ⑲ 일반기부금란:
가. ③ 회사계상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⑬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일반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.
나.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⑰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.
※ 연결법인의 경우 "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6서식(을)]"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.
9. ⑳ 기타기부금란: "기부금명세서(별지 제22호서식)"의 ⑨ 소계란의 라. 그 밖의 기부금(코드50)을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 및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란에 적습니다.
10. ㉑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⑭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.
11. ㉒ 기업업무추진비(㉑,㉒,㉓ 포함)란:
가. ③ 회사계상금액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나. ④ 세무조정금액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②란 및 ⑮란의 합계액[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]을 적습니다.
※ 연결법인의 경우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76호의15서식(갑)]"의 ㉒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의 ㉓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.
12. ㉓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란:
가. ③ 회사계상금액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 총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⑮ 총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.
나. ④ 세무조정금액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②의 금액[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]을 적습니다.
13. ㉔ 문화 기업업무추진비의 회사계상금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4. ㉕ 전통시장,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의 회사계상금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⑪란, ⑫란 및 ⑬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5. ㉖ 외화자산·부채평가손익란: "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40호서식(갑)]"의 가.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평가손익란과 나.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손익란의 ③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, "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40호서식(갑)]"의 가.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평가손익란과 나.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손익란의 ⑥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란에 적습니다.
16. ㉗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차입금이자란: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6호서식(갑)]의 ⑧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.
17. ㉘ 소득처분금액란: "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"의 ③ 소득처분란이 상여(코드 100)·배당(코드 200)·기타소득(코드 300)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18. ㉙ 이익처분금액란: "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[별지 제3호의3서식(4)]"의 중간배당액,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19. ■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.

사 업 연 도	· ~ ·	주요계정명세서(을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재고자산·유가증권 평가

① 자 산 별	② 신고방법	③ 평가방법	④ 회사계산 금 액	조정계산금액		⑦ 조 정 액 (⑤ 또는 ⑤와⑥ 중 큰 금액-④)
				⑤ 신고방법	⑥ 선입선출법	
⑩ 제 품 및 상 품						
⑩ 반제품 및 재공 품						
⑩ 원 재 료						
⑩ 저 장 품						
유가증권	⑩ 채 권					
	⑩ 기 타					
⑩ 합 계						

2. 국고보조금 등·공사부담금·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

⑧ 구 분	⑨ 금 액	⑩ 취득자산가액	⑪ 회사손비계상액	⑫ 한도초과액 (⑪-⑩)	⑬ 미사용분 익금산입액
⑩ 국고보조금등					
⑩ 공 사 부 담 금					
⑩ 보 험 차 익					

3.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

적 수			⑪ 인정이자	⑫ 회사계상액	⑬ 조정액
⑭ 가지급금	⑮ 가수금	⑯ 차 감(⑭-⑮)			

4. 건설자금이자 조정

⑳ 구 분	㉑ 건설자금이자	㉒ 회사계상액	㉓ 상각대상자산분	㉔ 차감조정액(㉑-㉒-㉓)
㉕ 건설 완료 자산분				
㉕ 건설 중인 자산분				
합 계(㉕+㉕)				

작성 방법

1. 재고자산·유가증권 평가

- 가. ② 신고방법 및 ③ 평가방법은 [별지 제39호서식]의 ③ 신고방법 및 ④ 평가방법을 자산별로 적습니다.
- 나. ④ 회사계산금액, ⑤ 신고방법, ⑥ 선입선출법과 ⑦ 조정액은 [별지 제39호서식]의 ⑬ 회사계산금액, ⑮ 신고방법금액, ⑰ 선입선출법금액과 ⑱ 조정액의 자산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⑩ 합계란은 [별지 제39호서식]의 ⑬ 회사계산금액, ⑮ 신고방법금액, ⑰ 선입선출법금액 및 ⑱ 조정액의 계란과 일치해야 합니다.

2. 국고보조금등·공사부담금·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

- 가. ⑨ 금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① 보조금수령액, ⑩ 공사부담금금액 및 ㉑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나. ⑩ 취득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, ⑮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지급받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계 및 ㉒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⑪ 회사손비계상액 및 ⑫ 한도초과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⑧·⑰·㉓의 회사계상액 및 ⑨·⑮·㉔의 한도초과액 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라. ⑬ 미사용분익금산입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㉕ 익금산입액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
3.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

- 가. ⑭ 가지급금과 ⑮ 가수금 적수란은 [별지 제19호서식(갑)]의 가지급금적수(②+⑩)의 계란과 가수금적수(③+⑬)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나. ⑰ 인정이자와 ⑱ 회사계상액은 [별지 제19호서식(갑)]의 인정이자(⑤+⑮)란과 회사계상액(⑥+⑰)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⑲조정액란은 [별지 제19호서식(갑)]의 조정액(⑨+㉑)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
4. 건설자금이자 조정

- ㉑ 건설자금이자, ㉒ 회사계상액, ㉓ 상각대상자산분 및 ㉔ 차감조정액은 [별지 제25호서식]의 ① 건설자금이자, ② 회사계상액, ③ 상각대상자산분 및 ④ 차감조정액의 해당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
[별지 제47호서식 부표] 삭제 <2010.3.31>